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이은주 의원

안녕하십니까? 이은주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“도로점유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”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“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”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조정하는 한편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원상복구계획 제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점유공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